



장애 혜택 설명서 (Disability Benefits)

연금국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관장하며, 미국 장로교단 관련 기관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은퇴, 의료, 사망, 그리고 장애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연금국은 보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그리고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는 연금국이 제공하는 플랜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사항을 요약합니다.

혜택 요약 (Summary)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은 장애로 인하여 일할 수 없게 된 플랜 가입자를 돕기 위하여 매월 수입과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근무중이거나 장애자인 가입자 (Active and Disabled Members)

일반적으로, 혜택 플랜의 장애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이 되는 가입자를 보호합니다:

- 자격이 되는 고용 기관에서 가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용기관이 가입자를 위하여 사망 장애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밀린 부담금이 없고;

또는

- 가입자가 과도기 상태로 (Transitional participation coverage) 혜택 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일 때 (즉, 미국 장로교 내에서 목회지를 찾는 동안 노회가 일시적으로 미고용 상태인 것을 승인했거나, 승인된 휴가 중일 때), 고용기관이 사망 장애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밀린 부담금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 장애 플랜에 가입한 후 첫 12개월안에 장애자가 되고 그 장애가 플랜에 가입한 지 12개월 안에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병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 장애 혜택은 지불되지 않으며 다른 모든 혜택(의료, 연금, 사망, 추가 사망, 치과, 그리고 추가 장애 혜택)도 중단됩니다.

장애 혜택 (Disability Benefits)

월 장애 혜택은 가입자의 실제 급여나 (최대 \$100,000) 장애 상태가 되었을 당시 적용되는 중간 급여 중 더 큰 액수의 60%에 기준합니다. 파트 타임일 경우 근무 시간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처음 장애 혜택은 장애 상태가 되었을 당시 가입자의 실제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 혜택 지불은 장애 상태가 된 날로부터 91 일째 되는 날 혹은 고용기관이 급여를 종료한 날 중 더 나중 날부터 시작합니다. 장애 혜택은 다른 재원으로부터 가입자가 받는 장애 혜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 때 다른 재원은 workers' compensation 이나 Social Security, 혹은 가입자가 Social Security 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귀속 혜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애 상태가 될 당시 가입자가 가지고 있던 의료, 사망, 추가 사망 혜택이 장애 기간 동안 계속되며, 이 때 자격이나, 기간, 비용 등에 관한 혜택 플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혜택 플랜 책자는 pensions.org 에서 볼 수 있고, 800-773-7752 (800-PRESPLAN) 에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장애 상태가 되기 직전 연금 플랜에 들고 있었을 경우 계속 연금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 상태가 되기 전에 초과 플랜에 등록하고 있었으면, 계속하여 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불입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장애 혜택을 계속 받을 자격은 가입자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할 때입니다:

- 연금국이 장애 상태인 것을 승인하고;
- 처방된 의료 치료를 받으며; 그리고
- 요청하면 직업적인 재활에 참여할 때.

장애 혜택은 다음의 경우에 끝납니다: 연금국이 가입자가 더 이상 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거나, 플랜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거나, 일하기 시작했거나,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isability Benefits* (DSB-100) 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장애 혜택 (Optional Supplemental Disability Coverage)

연봉 \$110,000 이상을 받는 가입자는 \$100,000 이 넘는 급여액의 60%에 해당하는 추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장애 혜택은 최대 연금 가입 기준액까지 해당 급여액의 \$10,000 단위로 제공되며 불입금은 가입자 혹은 고용기관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입자는 이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설명서에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와 공식적인 은퇴 저축 플랜 문서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플랜 문서가 우선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원하면 pensions.org 를 이용하거나,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십시오.